

선택진료의료기관([]신규·[]변경) 현황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병상수
	소재지 우편번호()		
통보인	성명		전화번호

진료과목	전체 의사수 (A)	진료가능 의사수 (B)	실제진료참여 의사수 (B')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 (C)	추가비용징수 의사수 (D)	B - D	D/C(%)	적용일
총 계								

「의료법」 제46조제6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의료기관 ([]신규·[]변경)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 방법

1. "허가병상수" 는 현황 통보서 제출일 현재 허가병상수입니다.

2. "진료과목"은 「의료법」 제43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진료과목 순이며,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받은 내과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세부전문과목별로 작성합니다.

3. "전체 의사수(A)"는 재직 중인 총 의사(인턴, 레지던트 포함)의 인원수입니다.

4. "진료가능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5. "실제진료참여 의사수(B′)"는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6.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수(C)"는 (B) 중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추가비용 징수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7. "추가비용징수 의사수(D)"는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 가능 의사 중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제외한 실제로 추가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의사의 인원수입니다.

추가비용징수 자격을 갖춘 진료가능 의사등 현황 총 _____명

[illegible]

- "면허종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기록합니다.
- "전문의 자격종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선택 진료 추가징수 여부"는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으로 지정된 의사등인 경우 √ 표시를 합니다.
- "비고"는 「선택 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1항 각 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의 경우 비고란에 "2"라고 적으며,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의 경우 비고란에 "3-나"라고 기재
-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임상교수요원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임명과 관련한 공식 문서 등) 사본 1부 첨부